

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주요 내용(육계관련)

농림수산식품부

1. 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(제12조의7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* 현재는 닭·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닭·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중

※ 근거법령 :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닭·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·오리의 식육을 보관, 운반,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을 확대
-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

다. 입법효과

- 닭·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1)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(2004년 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 종합대책)

(1) 목적

- 포장 유통(표시)으로 수입 닭·오리고기와 구별로 차별화 가능
- 비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·오리고기의 재 오염 기회 차단

*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계육협회에서 개선책 마련 요구

(2) 포장의 정의(안)

- 닭·오리 지·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, 개별잔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

(3) 포장 원칙

- ① 닭·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(자체 가공제외)의 포장

- 포장 후, 합격검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명, 소재지,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

- ② 닭·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, 정육 등의 포장

-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
축장·생산가공장 소재지, 함
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고 자체
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

- ③ 닭·오리고기 판매장(백화점,
대형마트, 재래시장, 정육점)
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
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
- 생산시 포장완료된 닭·오리
고기를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
- ④ 수입된 닭·오리고기를 가공
하거나,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
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, 표
시 등을 하도록 의무화

(4) 의무시행 시기

- 닭·오리도축장의 도축규모에
따라 단계별 포장유통 시행
- 1일 도축 8만수 이상 : 2006.
9. 22부터 시행
- 1일 도축 5만수 이상 : 2008.
6. 22부터 시행
- 전면 포장유통 : 2011. 1. 1부
터 시행

* 2009년 기준으로 닭·오리를 1일 평균
5만수 이상 도축하는 20개 도축업체
(전체 51개)에서 전체 도축두수(닭6억8
천만수)의 83% 수준을 포장유통 중

사원의 1일 1인 적정 검사량을 정하
지 않고 전년도 검사량에 따라 자체
검사원 수만 확보하면 1일 검사량을
제한하지 않아 도축검사 부실 우려
가 제기됨(감사원 통보사항)

* 현재 가축의 식육은 시·도 검사관이 검사하
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닭·오리 등의 검사
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
고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체검사원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
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
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
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
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.
- 다만, 관련 협회의 건의 검토 결과 검
사담당자(책임수의사)의 채용 어려움
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
(시행일 : 2011.11.25까지 4만수,
2011.11.26~2012.11.25 3만수,
2012.11.26이후 2만수)

다. 입법효과

-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
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닭·오리 식
육 등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
있을 것으로 기대됨.

2. 도계장 책임수의사(검사담당자)의 1일 검
사업무량 개선(별표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축장 자체검